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1. 일반적인 계약의 모습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

2. 불특정 다수인과의 계약의 특수성

부합계약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약관 내용을 작성하고 소비자에게는 제시만 하고, 소비자로서는 제시된 약관에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만 정할 뿐인 계약 → 보험계약

3. 소비자는 왜 보험약관 내용에 구속되는가?

청약서에 약관 내용이 포함되고, 이 청약서에 소비자가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의미는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보험약관 내용을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고 해도 소비자는 그 내용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대법원 판례)

이를 위해 보험자에게 약관설명 의무의 요구됨.

4. 보험약관의 해석이 왜 중요한가?

보험약관은 보험에 대한 지식 및 경제적 지위가 훨씬 우월한 보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며 그 용어가 지극히 전문적이고 법률용어가 많으며 애매한 표현 등이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어서 그 해석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약관해석의 문제는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법원이 해석의 기초로 삼고 있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5. 보험약관 해석 원칙

(1) 개별약정 우선원칙

보험계약 당사자가 보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별도로 합의를 하였다면 그 합의된 약정이 약관에 우선한다.

기업보험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면책조항의 하나인 전쟁위험을 담보하기로 합의하는 것과 같이 양 당사자의 대등한 경제적 지위나 협상력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 개별약정이 체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면에 가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적극적으로 개별약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개는 모집종사자에 의한 특정 행위에 대해 개별약정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개별적인 합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 보험소비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측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는 약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해석원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도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수정해석의 원칙

수정해석의 원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보험약관이 보험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조항의 내용을 일정한 범위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해석원리를 말한다.

이를 법원에 의한 약관의 내용통제라고 한다.

(4) 객관적 해석의 원칙

(가) 개념

보험약관을 해석함에는 일반 계약의 해석과는 달리 개개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약관을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수 많은 보험계약자들로 구성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확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보험단체를 구성하는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을 해석할 때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보험계약자 측이 자신이 처한 특수하고 개별적인 사정, 의도 등을 계약에 반영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약관 해석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개별약정 방식을 취해야 한다.

(나) 판례

- 암보험에 있어서 암의 정의
- 자동차보험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피보험자성
- 자살사고와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의 문제

보험법 원리만을 따진다면 자살이란 고의적으로 피보험자가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므로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면책된다.

그런데 보통의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상태에서 야기되거나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2년이 경과된 후에 발생한 피보험자의 자살에 대해서는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때 지급되는 것은 일반사망보험금이다.

주계약에서 사망에 대해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재해사고에 대해 보다 고액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재해사망특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계약에서의 내용에 따르기로 재해사망특약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을 때, 2년이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해 주계약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니 이 조항을 준용하여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여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5)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가) 개념

보험약관해석의 여러 원칙을 다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명확하거나 특정조항에 대해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고, 그 각각의 해석이 모두 설득력이 있거나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약관을 작성한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약관해석의 원칙

(나) 보충성의 원칙과 적용범위

① 적용범위와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모두 적용했는데도 그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최종적으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여러 해석들 중에서 하나의 해석이 다른 것에 비해 보험계약자 측에게 유리하더라도 그 해석이 당해 계약 또는 약관의 목적과 취지 등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 측은 그 유리한 해석의 적용을 주장할 수 없다. 작성자에게 불이익한 해석방법을 선택하는 원칙이지, 소비자 측이 주장하는 해석방법을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다.

② 암보험약관 해석에서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

- 암 개념의 범위
- 암 수술 방법에 관한 해석
-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의 범위에 관한 해석

③ 기타 질병보험에서의 사례

④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작성자불이익 원칙의 적용범위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의 치료 행위에 대해 암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이 많고 이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이 문제는 약관상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6. 마무리